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한국거래소 귀중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며, 기재사항 중 거짓의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2일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치 형 (인)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4-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4-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4-01-01	2023-01-01	2022-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4-12-31	2023-12-31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최종일	성명 :	김예지
직급 :	전무	직급 :	Professional
부서 :	재무실	부서 :	자금팀
전화번호 :	02-707-7730	전화번호 :	02-707-7943
이메일 :	jongilchoi@hyosung.com	이메일 :	yaeji.kim@hyosung.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주)효성 외 12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2.66
		소액주주 지분율(%)	41.30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스판덱스, 나이론, 폴리에스터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효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7,776,065	7,526,919	8,882,730
(연결) 영업이익	270,728	213,393	123,594
(연결) 당기순이익	183,832	98,706	19,183
(연결) 자산총액	4,724,183	4,070,471	4,319,879
별도 자산총액	1,913,854	1,614,788	1,677,616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4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X	주총 21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X	X	전자투표 미도입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25년 3월 20일 주주총회 개최 ※ 25년 주총집중일 : 3/21, 27, 28일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X	배당시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실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나, 절차 개선 관련 정관 미반영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X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배당의 기준과 방향을 공개했으며, 배당실시 계획에 대해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연 1회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X	명시적인 승계정책 없음. 단, 정관 제29조 선임절차 및 임원후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O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X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집중투표제 채택	X	X	정관에서 배제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X	명문화된 정책 미수립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O	감사위원회 직속 감사지원팀 설치 운영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O	감사위원회 위원 2인(대표감사위원 및 감사위원 1인) 충족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O	O	분기별 1회이상 정기개최 중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 정보접근 등의 근거 마련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Hyosung Way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 결의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위원 또한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서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되고 있으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 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50%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이사회에 참여해 대표이사를 맡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금융, 의료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객관적·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hyosungncc.com/kr/company/ir/governance/charter>) 및 사업보고서 (<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50% 이상(보고서 제출일 기준 50%)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인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기 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이사회 내에 총 5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사 6인 중 3인 사외이사) 이상으로 하여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윤리경영 실천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위해,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단,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은 제외) 위원회 결의사항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 및 견제 기능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재무·재정·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중 금융·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보고서 제출일 현재 2인)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해 법령상 의무보다 앞선 3주 전에 (정기주주총회 기준)공고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주)효성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7회의 정기주주총회 및 1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2주 전보다 앞선 약 3주전(보고서 작성일 기준 최근 3개년간 20~21일 전, 정기주주총회 기준)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있으며,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였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제공된 정보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이며 회의 목적사항은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과 부의사항(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영업양수 결정 등)이었습니다.

또한 소집공고 서류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이사회 출석률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 포함)과 사외이사 보수현황을 기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써 단일거래 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거래 및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자산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내역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계의 현황과 회사의 현황, 시장점유율 등도 기재하는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영업의 양수와 같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경위 및 주요내용,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개최되었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7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X	O
소집결의일		2025-02-27	2024-12-12	2024-02-23
소집공고일		2025-02-27	2025-01-08	2024-02-23
주주총회개최일		2025-03-20	2025-01-23	2024-03-14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1	15	20
개최장소		본사/서울 마포구	본사/서울 마포구	본사/서울 마포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6명 중 2명 출석	6명 중 3명 출석	6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 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	1) 발언 주주 : 4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 발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 약 3주전 소집결의를 하고, 최소 20일에서 최대 21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계약 조건 등에 대한 협의로 인해 주주총회 개최일 15일 전에 소집통지 및 공고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 및 참석률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주들의 용이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자사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자료 공시를 통해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권유자인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시 필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권유 행위 2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16일 개최되었던 제5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0.2%, 2024년 3월 14일 개최되었던 제6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9.1%, 2025년 1월 23일 개최되었던 임시주주총회는 참석률 63.2%, 2025년 3월 20일 개최되었던 제7기 정기주주총회는 참석률 63.8%를 기록하였습니다.

※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표 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7회 정기주주총회	제6회 정기주주총회	제5회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2023년 3월 24일, 30일, 31일
정기주주총회일	2025-03-20	2024-03-14	2023-03-16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5개 의안(6기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1개 의안(효성화학(주)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승인)을,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3개 의안(7기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각 의안별 찬반 비율 및 상세 내용은 아래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1)	(1) 중 의결 권 행사 주식 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7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7기('24.1.1 ~ '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291,867	2,736,333	2,711,633	99.1	24,700	0.9
	제2호	보통(Ordinary)	은성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499,570	944,036	884,011	93.6	60,025	6.4
	제3호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291,867	2,736,333	2,143,562	78.3	592,771	21.7
임시주주총회	제1호	특별(Extraordinary)	효성화학(주)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726,451	2,501,470	91.7	224,981	8.3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보통(Ordinary)	제6기('23.1.1 ~ '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958,237	99.2	24,416	0.8
	제2-1-1호	보통(Ordinary)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035,282	68.2	947,371	31.8
	제2-1-2호	보통(Ordinary)	김치형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840,023	95.2	142,630	4.8
	제2-1-3호	보통(Ordinary)	정준재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963,253	99.3	19,400	0.7
	제2-2-1호	보통(Ordinary)	이재우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979,683	99.9	2,970	0.1
	제2-2-2호	보통(Ordinary)	유철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946,523	98.8	36,130	1.2
	제3호	보통(Ordinary)	조인강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423,091	1,090,054	858,147	78.7	231,907	21.3
	제4-1호	보통(Ordinary)	이재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423,091	1,090,054	1,089,054	99.9	1,000	0.1
	제4-2호	보통(Ordinary)	유철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423,091	1,090,054	1,055,894	96.9	34,160	3.1
	제5호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4,315,690	2,982,653	2,161,100	72.5	821,553	27.5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대한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등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당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동 내용을 홈페이지 내 효성티앤씨(주) 기업지배구조현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 35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 주주제안권 처리를 담당하는 재무실 자금팀에서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정관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리는 등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 상법시행령 12조 등의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당사에서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제안권에 대한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현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수립 등을 검토하여 주주 권리 보호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의 기준과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와 경영실적, Cash Flow 상황, 재무구조, 시가배당률, 동종업계 내 타 회사들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실시 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할 이후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1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서 배당기준일 변경, 연결 당기순이익의 20% 이상 배당 검토 등을 담은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정관상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배당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45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총회 약 3주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 당일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31일 공시를 통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의 기준과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영문자료로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에 개최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2024.03.14), 제7기 정기주주총회(2025.03.20)를 통해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결산배당 외 다른 배당은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당사가 실시한 현금배당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등 자세한 내용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은 매결산기 말일을 이익배당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배당을 포함한 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등을 승인하고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23	X
2차배당	12월(Dec)	O	2024-12-31	2025-02-27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주주환원의 기준과 방향을 공개했으나, 해당 내용을 영문자료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정관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공시한 바와 같이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의 기준과 방향 등의 내용이 영문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달성하는 동시에, 주주권리를 존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7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분할(2018년 6월 1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2025년 6월 2일)까지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의 주당 배당액은 5기 10,000원, 6기 10,000원, 7기 10,000원이었으며, 각 사업연도별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현황 및 현금배당 성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및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정관상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배당은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45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배당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추후 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2024년	12월(Dec)	-	518,749,290,174	43,156,900,000	10,000	4.1
	종류주	2024년	12월(Dec)	-	0	0	0	0
전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417,770,684,484	43,156,900,000	10,000	2.7
	종류주	2023년	12월(Dec)	-	0	0	0	0
전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368,428,007,604	43,156,900,000	10,000	2.7
	종류주	2022년	12월(Dec)	-	0	0	0	0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32.08	46.31	372.33
개별기준 (%)	27.43	44.98	14.9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은 없으나, 관련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주환원의 최우선 방안으로 분할이후 지난 7년간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현금배당 외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증설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감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7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특수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금배당 외 다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 IR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수는 4,327,682주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150,000,000	50,000,00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4,327,682	2.89	- 자기주식 35,815주 보유 (2025.06.02 기준) - 보통주 발행주식수/보통주 발행가능주식수 * 100
종류주	0	0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며, 국내·아시아 지역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콜 및 CEO day 개최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진행된 주주와의 의사소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소액주주 등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 자	대 상	형 식	주요 내용	비 고
2024.01.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1.30~02.0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NDR
2024.02.14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2.2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3.2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2024.03.2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3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4년 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4.29~05.02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4.05.3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H투자증권 컨퍼런스
2024.06.2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2024.07.1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CEO day)
2024.07.29~08.01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4.08.07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8.0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8.13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국내컨퍼런스
2024.09.23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2024.11.01~11.0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024.11.2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IBK투자증권 컨퍼런스
2024.12.13	국내 기관투자자	IR	특수가스 사업부 영업양수 관련 설명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CEO day)
2025.02.04~02.06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5년 전망	NDR
2025.03.28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2025년 전망	신한투자증권 컨퍼런스
2025.04.28~04.30	국내 기관투자자	IR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NDR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 사이 소액주주와의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 등 소수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자가 1% 미만의 소액주주입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수시로 실시하는 NDR 및 CEO day를 통해 기관 투자자 등 소액 주주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외국인 주주 전담 직원을 두고,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사항에 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말 기준 당사의 해외투자자 주주 비율은 15.99%로, 향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대·내외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투자자와의 별도 소통 행사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센터 탭을 통해 별도로 IR 관련 문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중문 홈페이지를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영문 공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총 96건을 공시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높아지는 주주들의 정보 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시성,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재무·주식·공시·IR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실적발표회 자료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의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DART(<http://dart.fss.or.kr>) 등의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주주의 관심이 높은 경영실적 발표는 매분기 이사회 개최일 당일 또는 내부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 사이 진행한 공정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4.01.2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3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2024.04.26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2024.07.26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2024.10.31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2025.02.03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2025.04.25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2025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참정실적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사전 승인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별도의 내부통제 규범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 설립 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그 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분기 10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거래에 대해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상 내부거래·자기거래 등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 통제를 명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①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중 국내외계열사들과 반복되는 동종·동형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포괄적 사전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자기거래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31일, 단위: 억원)

이사회결일	거래상대방	거래구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고
2024.10.31	(주)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5년 연간	225	-
	Hyosung Istanbul TEK STIL LTD.STI.			215	
	Hyosung Dong Nai Co., Ltd.			6,000	
	Hyosung Holding USA, Inc.			1,850	
	Hyosung RUS.			10	

※ 매년 10월 국내외계열사와의 동종·동형의 거래에 대해 익년도 연간 예상거래금액 및 가격 결정조건 등을 일괄 승인받은 후, 시장상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승인 진행

(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내역

(기준일: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31일, 단위: 억원)

이사회결일	거래상대방	거래구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고
2024.10.31	(주)에이치에스 효성	상품·용역거래 (매출/매입)	2025년1분기	200	-
			2025년2분기	200	
			2025년3분기	200	
			2025년4분기	200	
	효성화학(주)		2025년1분기	1,030	
			2025년2분기	1,030	
			2025년3분기	1,030	
			2025년4분기	915	

※ 매년 10월 국내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익년도 분기별 예상 거래금액을 일괄승인 받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변경승인을 진행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가. 당사와 특수관계인간 채무보증 및 담보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대상자	관계	채권자	채무내용	채무보증 및 담보	채무보증 기간	기초	채무보증 내역			여신 금액
							증가	감소	기말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계열 회사	SC은행외	운영자금	채무보증	2024.08월 ~ 2025.11 월	25,788	15,688	-	41,476	0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산업은행 외	운영자금 외	채무보증	2023.12월 ~ 2026.03 월	56,296	37,741	-	94,037	61,204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SC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2024.10월 ~ 2025.08 월	6,447	903	-	7,350	0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산업은행 외	시설자금 외	채무보증	2024.01월 ~ 2027.03 월	83,058	5,871	-	88,929	74,571
Hyosung Japan Co., Ltd.		하나은행 외	운영자금 외	채무보증	2024.05월 ~ 2025.12 월	150,975	15,697	-	166,672	52,280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산업은행 외	시설자금 외	채무보증	2019.06월 ~ 2028.08 월	199,727	6,114	-	205,841	146,365
Hyosung International (HK) Limited		산업은행 외	운영자금 외	채무보증	2024.05월 ~ 2025.09 월	18,052	1,646	-	19,698	0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산업은행 외	시설자금 외	채무보증	2021.09월 ~ 2029.08 월	309,923	97,530	-	407,453	195,656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Vietin bank 외	운영자금 외	채무보증	2024.02월 ~ 2025.07 월	48,997	21,563	-	70,560	42,210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개 법인		씨티은행	운영자금	채무보증	2024.12월 ~ 2025.12 월	23,983	3,359	-	27,342	0
합 계						923,246	206,112	0	1,129,358	572,286

※ 채무보증금액 및 여신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2024년 12월말 기준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기말 거래내역 합계 등은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채무보증은 동일법인 내 다수(각 보증기간 상이)인 바, 채무보증건 중 가장 빠른 기간부터 가장 늦은 기간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채무보증의 조건이 상이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개 법인 채무보증 건은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및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등 6개 법인 통합 운영자금 차입 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건입니다.

나.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①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기준일: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당 기			고정자산 취득 ²⁾
		매출 등 ¹⁾	배당수익	매입 등 ¹⁾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효성	311	-	74,077	-
	소 계	311	-	74,077	-
관계기업	Zhangjiagang Xiaosha Coil Service Co., Ltd.	842	595	-	-
	소 계	842	595	-	-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9,736	3,831	6,219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13,532	-	4,390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13,805	-	77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7,876	11,492	28,820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6,066	-	2,877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23,884	-	2,097	-
	Hyosung International (HK) Limited	3,916	-	500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14,831	-	187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229	-	-	-
	Hyosung Japan Co., Ltd.	168,069	-	227	-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	981	1,554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	1,213	-
	Hyosung Dong Nai Co., Ltd.	142,095	-	140,986	-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23,830	-	18,049	-
	Hyosung Europe S.R.L.	33,277	-	1,861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 TI.	18,168	23,269	1,044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9,352	-	538	-
	Hyosung Mexico City, S.A. de C. V.	-	-	891	-
	Hyosung Spain, S.L.	-	-	1,247	-
	주세빛섬	3,340	-	2,677	-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13,666	-	63,158	-
	PT. HYOSUNG JAKARTA	-	-	812	-
	소 계	505,672	39,573	279,424	-

기 타 특수관계자	HS Hyosung Holdings USA, Inc.	128,481	-	549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9	-
	공덕개발(주)	-	-	2,754	30
	신동진(주)	-	-	2,727	328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주)	-	-	456	32
	Hyosung RUS.	-	-	675	-
	효성티앤에스(주)	38	-	12	-
	효성중공업(주)	2,813	-	1,270	-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9,248	-	114	-
	주에이치에스효성	8	-	33,320	-
	효성화학(주) ³⁾	74,465	-	388,871	-
	진흥기업(주)	1,855	-	1	-
	갤럭시아에스엠(주)	-	-	134	-
	효성아이티엑스(주)	11	-	343	-
	Hyosung Vietnam Co., Ltd.	311,676	-	11,353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2,360	-	3,814	-
	케이비와이즈스타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	-	70	9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	527	-
	효성 씨브이씨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 1호	-	-	1,850	-
	스타트업 코리아 효성 딥테크 벤처투자조합	-	-	170	-
	기타	34	-	3	-
소 계	530,989	-	449,022	399	
합 계	1,037,814	40,168	802,523	399	

1) 매출 등에는 매출, 기타수익, 이자수익 등이, 매입 등에는 원재료 매입, 판관비, 기타비용, 투자유가증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용권자산 취득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효성화학(주) 당기 매입 등에는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채무 잔액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당 기 말		
		매출채권	기타채권 등 1)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 1)

회사에 유 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요성	118	60	1,359	2,240
	소 계	118	60	1,359	2,240
관계기업	Zhangjiagang Xiaoshan Coil Service Co., Ltd.	-	-	41	24
	소 계	-	-	41	24

종속기업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870	-	470	-
	Hyosung International Trade (Jiaxing) Co., Ltd.	313	-	338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11,301	1	48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682	-	8,275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1,455	1	197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57,471	628	1,060	-
	Hyosung International (HK) Limited	15	-	-	25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29,404	16	75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	19	-	-
	Hyosung Japan Co., Ltd.	8,598	16	-	6

Hyosung TNC (Taiwan) Corporation	-	-	-	7
Hyosung Dong Nai Co., Ltd.	15,693	127	26,066	-
Hyosung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	-	11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34,729	124	4,187	-
Hyosung Europe S.R.L.	15,172	-	-	351
Hyosung Istanbul TEKS TIL LTD.STI.	10,350	-	-	11
Hyosung Brasileira e Comercio de Fibras Ltda.	951	-	-	-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6,505	443	20,552	-
Hyosung Mexico City, S.A. de C.V.	-	-	-	7
Hyosung Spain, S.L.	-	-	-	28
PT. HYOSUNG JAKARTA	-	-	-	-
주세빛섬2)	-	83,709	-	246
Hyosung Singapore Private Ltd.	-	-	-	489
소 계	193,509	85,084	61,268	1,181

기 타 특 수 관 계 자	HS Hyosung Holdings USA, Inc	2,526	-	-	1,844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21	-	-
	공덕개발(주)	-	1,350	-	679
	신동진(주)	-	1,601	-	245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주)	-	648	-	41
	효성중공업(주) ³⁾	223	8,400	-	207
	㈜에이치에스효성	-	-	795	8,188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627	2,287	11	877
	효성화학(주) ⁴⁾	6,919	139,083	19,317	524
	진흥기업(주)	19	-	-	-
	갤럭시아에스엠	-	-	8	-
	Hyosung Vietnam Co., Ltd.	11,104	-	2,925	-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527	-	446	1
	Nantong Hyosung Transformer Co., Ltd.	-	-	-	-
	기타	7	60	3	223
소 계	21,952	153,450	23,505	12,829	
합 계	215,579	238,594	86,173	16,274	

1) (주)세빛섬에 대한 기타채권 등에는 예치보증금, 대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말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회원권 8,400백만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효성화학(주) 특수가사사업부 영업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기타채권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2024년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

상대방	내용	비고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해외계열회사)	\$45백만 (원화 61,382백만원) 출자	- 2024년 5월 경영위원회 승인 - 효성티앤씨(주)는 기존 지분율대로 75%(\$52.5백만)출자하였으며, - 2025년 1월 출자 완료함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해외계열회사)	\$11백만 (원화 15,290백만원) 출자	- 2022년 5월 경영위원회 승인 - 총 자본금 \$118백만으로 효성티앤씨(주) 100% 출자이며, - 2022년부터 출자하여 2024년 3월 출자 완료함
효성네오켄 주식회사 (국내계열회사)	10백만원 출자	- 2024년 12월 경영위원회 승인 - 2024년 12월 설립

라. 2024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① 공시대상기간 중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1%) 이상인 거래 (단위: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시점	거래금액	자산대비 비중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3월	370	2.29%
		2024.04월	223	1.38%
		2024.08월	184	1.14%
		2024.08월	252	1.56%
		2024.09월	1,152	7.14%
		2024.09월	226	1.40%
	출자	2024.05월	719	4.45%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11월	186	1.15%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1월	236	1.46%
		2024.08월	224	1.39%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3월	311	1.93%
Hyosung Japan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5월	236	1.46%
		2024.05월	335	2.07%
		2024.07월	248	1.54%
		2024.11월	416	2.57%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7월	278	1.72%
		2024.07월	250	1.55%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외 5개 법인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12월	266	1.65%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05월	272	1.68%
		2024.08월	268	1.66%
스타트업 코리아 효성 딥테크벤처 투자조합 [해외 계열회사]	출자	2024.12월	170	1.05%

(주)효성화학 [해외 계열회사]	영업양수	2024.12월	9,200	56.97%
(주)효성 [해외 계열회사]	매입 (CI사용료)	2024년	193	1.20%
(주)세빛섬 [해외 계열회사]	금전대여	2024.03월	697	4.32%

※ 2023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외 5개 법인 채무보증 건은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및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등 6개 법인 통합 운영자금 차입 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건입니다.

② 공시대상기간 중 연간 거래 총액이 일정 규모(5%) 이상인 거래(단위: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시점	거래금액	자산대비 비중
Hyosung Japan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1,583	20.23%
	매 출	2024년	1,681	
	매 입	2024년	2	
	합 계		3,266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2,882	23.91%
	출 자	2024년	719	
	매 출	2024년	239	
	매 입	2024년	21	
	합 계		3,861	
Hyosung Dong Nai Co., Ltd. [해외 계열회사]	매 출	2024년	1,421	17.53%
	매 입	2024년	1,410	
	합 계		2,831	
Hyosung Dong Nai Nylon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661	8.86%
	매 출	2024년	137	
	매 입	2024년	632	
	합 계		1,430	
Hyosung New Material & High Technology (Quzhou)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869	5.39%
	매 출	2024년	2	
	매 입	2024년	-	
	합 계		871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882	8.05%
	매 출	2024년	238	
	매 입	2024년	180	
	합 계		1,300	

Hyosung Holdings USA, Inc. [해외 계열회사]	매 출	2024년	1,285	
	매 입	2024년	5	
	합 계		1,290	7.99%
Hyosung Vietnam Co., Ltd. [해외 계열회사]	매 출	2024년	3,117	
	매 입	2024년	113	
	합 계		3,230	20.00%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해외 계열회사]	채무보증	2024년	676	
	매 출	2024년	148	
	매 입	2024년	2	
	합 계		826	5.11%
효성화학(주) [국내 계열회사]	영업양수	2024년	9,200	
	매 출	2024년	744	
	매 입	2024년	2,509	
	합 계		12,453	77.12%

※ 2023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범을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지속하여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 변동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Y(O)

당사는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 변동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2024년 12월 체결된 효성화학(주) 특수가사사업부 영업양수 계약 과정에서는 주주 권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12일 이사회 결의로 효성화학(주) 특수가사사업부 생산시설 및 영업 전부 양수를 결정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은 후 양수인의 지위를 계열회사인 효성네오켐(주)에 이전하여 2025년 1월 31일 계약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영업양수도 계약은 양수가액이 9,200억원으로 직전사업연도말 연결자산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양수에 해당하는 바, 당사는 주주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공시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 공시를 통해 영업양수도의 거래구조, 목적, 주요 계약조건, 절차, 기대효과 등의 정보를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공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수 관련 공시]

접수일자	공시
2024.12.12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4.12.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12.12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2025.01.03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5.01.08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5.01.15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5.01.15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1.15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2025.01.2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2025.01.23	임시주주총회결과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내 및 행사 지원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주주총회소집공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행사 요건, 매수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와 주식매수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중 대금을 지급 및 공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 주주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당사 IR부서는 주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소액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화 창구를 운영하여 상시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양수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3일에는 각 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실무진이 참석하는 CEO-DAY를 개최하여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본 영업양수의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해 직접 대면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경청하며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영업양수계약 외에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조달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동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도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의 사례와 같이, 주주가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과정에서 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및 제522조의3 등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구분	승인 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이 금지된 사항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구분	승인 사항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 기업 이념의 제정·변경 - 중요한 업무제휴, 공동사업 전개(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중대한 경영사항 - 회계방침 변경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외의 상기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각 의결 내용에 대한 중요성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과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장회사이나,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에 의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50%(이사 6인 중 3인 사외이사) 이상으로 하여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법 제542조의9에서 별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요건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처음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당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 의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상 사업연도말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반기말, 사업연도말 연 2회 보고하고 있는 등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정관 제34조에서는 효율적인 회사의 업무수행과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 결산이사회 시 해당 기간의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운영규정상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위임한 결의사항

구분	승인사항
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발행,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의한 신주발행 및 실권주, 단주의 처리 포함)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우선주식의 이익배당방식, 우선배당을 결정, 보통주로의 전환사항 등 포함)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ESG경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재개정 승인 - 이사회 부의할 사항 사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당 (2) 감사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5)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9)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 (10)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11) 1,000억 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 (12) 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13) 상법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기타 위원회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서 사전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ESG관련 정책,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 계획 - 기타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공정거래관련 법규준수,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이행 실태,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 점검
보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외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영의사 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미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관련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에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 인력개발원에서 후보군 육성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음은 물론, 회사의 주요 사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업무 지식, 당사의 창립 이념과 경영 전략에 기반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인력개발원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인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 역량을 “지속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Profit Design을 할 수 있는가”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기 위해 승격한 전무/상무 및 신입 임원 대상으로는 승격 임원교육을 제공하며 임원 후보자 대상으로는 GMC(Global Management Course) 임원 후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GMC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인력 중 임원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된 임원은 승격 임원교육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렇게 관리되는 임원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영역별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최고 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사에서 진행한 임원 대상 교육 현황 및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4.2.14~15	사내	3	전무의 역할/책임, 중국/인도시장이해, Chat GPT, ESG, 경영역량강화 (장기적 경쟁전략 수립)	집합 교육
2024.2.14~15	사내	4	상무의 역할/책임, 중국/인도시장이해, Chat GPT, ESG, 경영역량강화 (담당사업의 Coverage 넓히기)	집합 교육

※ (주)효성 및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임원 후보자 대상 교육 현황]

일시	구분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2024.5.24~9.6	사내	32	경영역량강화 (전략경영,마케팅, 재무회계,생산관리, 인사조직)	온라인, 집합 및 실시간비대면 교육병행

※ (주)효성 및 계열사(HS효성그룹 포함)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기준입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2023년도 중 신임임원 외 승격임원 집합 교육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임원후보자 GMC 교육 또한 집합 교육으로 실행했으며, 해외에 근무중인 임원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 부문별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영 전반에 필수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경영 상황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을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 상황 및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경영진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의 다양화, 세밀화 등을 검토하여 후보(집단)에게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리스크관리 및 준법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정책, 준법통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시황 및 정책 환경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경영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위험과 기회 등을 리스크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①재무 리스크, ②비재무리스크(사업연속성 리스크, 경영 리스크)로 구분하여 리스크의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고, 주요 리스크의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 재무리스크

- 관리조직

: 재무실 주관 하에, 사업부 및 국내외 종속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적으로 재무위험을 측정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헷지 등을 실행합니다.

- 관리정책

범위	정의	관리현황
시장	주가, 금리, 환율변동 등 재무적 요소와 연관된 리스크	- 자금/무역금융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리스크 측정, 분석 및 헷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켜 환포지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위험 관리정책에 측정주기, 헷지기간, 헷지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신용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	- 내부 채권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매출채권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한도 설정 및 관리 - 투자 및 대여 등에 대해서는 신용조사 및 담보 등 회수방안 관리
유동성	예상하지 못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재무적 손실 리스크	-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예금성 현금 유지 - 긴급자금 수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

(2) 비재무리스크

- 관리조직

: 대표이사 직속의 ESG경영팀을 중심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에 연관된 각 실무 조직 내 ESG경영 담당자를 선정하여 ESG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한, 안전보건리스크는 안전보건팀에서 전담하며, 매년 초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준수 현황을 보고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관리정책

① 사업연속성 리스크

범위	정의	관리현황
공급망	원재료 수급 및 생산 연속성 차질에 따른 제품 납기 지연 리스크	- 공급연속성 비상사태(원부자재 공급 중단, 고객 공급 비상사태) 시나리오별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 원부재료 공급업체 대상 IATF16949, ISO9001, ISO14001에 준하는 정기평가 및 품질, 환경 감사 - 협력사 ESG 경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및 정기평가 - 정기적인 협력사 에너지 개선 방향 도출
재난 및 안전	지진, 화재 등의 재난 또는 작업장 내 안전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전사 안전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대표이사 직속의 CSO 주도 아래 안전보건팀을 운영하여 본사 포함 전 사업장 대상 안전, 보건, 재해 시스템 관리 점검) - 재해 및 안전사고 비상대응 조직 구축, 시나리오별 매뉴얼 및 복구조치사항 마련 - 공장화재, 폭발 등 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민관합동 훈련 - 공장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사고사례 및 위험물 취급법 교육 실시 - 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 공장 안전 순찰점 실시
환경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규제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으로 초래되는 법적 제재 및 벌금 리스크	- 환경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정기적인 잠재 리스크 진단 및 예방 - ISO 14001 인증 재심사 및 자체 검증 활동 - 화학물질 및 폐수 유출 등 환경 사고 시나리오별 정기적 대응 훈련 - 공장 환경안전전담 조직을 통해 공장 순찰점검 상시 실시

② 경영 리스크

범위	정의	관리현황
기후변화	배출량 관련 규제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및 관련 사업 전환 리스크	- 기후변화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 관련 법규 변화 모니터링 -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관리 - 탄소자산관리시스템 통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제물탄소배출량 산정 -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를 반영한 사업추진 방향 및 투자 의사 결정
품질관리	4M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지속적 공급/납품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부적합품이 발생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 타당성 평가(변경관리 및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변경으로 인한 영향) - 품질 수준 모니터링 - 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 - 품질 관리 리스크 비상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
인권	인권침해 리스크, 인적자원 관리 리스크	- 주기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및 개선 추진 - 인권방침 및 지침의 제정 및 배포 - 인권보호, 차별금지 관련 정기 교육 실시 - 제보채널 운영
보안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테러 혹은 내부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보 분실 발생 등의 리스크	- 보안 전담조직 운영 - 보안규정 및 운영기준 수립 - 문서중앙화 시스템(ECM)을 통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 보안솔루션 복합기 도입, 전용 USB 사용, 모바일 단말기 카메라 통제 등 문서의 생성, 수정, 반출입,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정보보안 10대 수칙 및 사내 보안가이드 정기 교육, 월 1회 이상 IT 보안 교육 진행
법률 및 윤리	사업에 불리한 계약체결 및 소송 또는 불공정거래,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 계약심사규정 준수 및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법률리스크 예방과 소송사건 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 외환, 특허, 계약관리 등 현업 실무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 - 청탁금지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교육 -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업데이트 - 입사자 전원 윤리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한 인식 제고 - 제보채널 운영
평판	오보 또는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리스크	- 신규 입사자, 신입 승격자, 신입 팀장 대상 PR 리스크 대응 교육 실시 - 홍보담당자 대상 행동 원칙 및 행동프로세스, 사례교육 실시를 통한 인식 제고 - 브랜드마케팅 및 다양한 채널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실시
마케팅윤리	광고나 마케팅 시 허위/과장/축소 또는 인지,습득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의 리스크	- '윤리적 마케팅 운영원칙'을 수립하여 운영 - 효성뿐만 아니라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외부업체도 운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용하도록 권장
브랜드/상표	브랜드/상표의 권리 침해나 가치 훼손 리스크	- 브랜드 및 상표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
수주	수급 조건, 계약 독소조항, 사양 불명확, 납기 미확보, 민원 등으로 인한 악성 수주 리스크	- 수주 심의, BAC(Bid Approval Committee) 운영

경영일반	담당자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운영상의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전자자원관리)를 활용하여 경영 제반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 - C-Cube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VOC의 관리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감염병 리스크 관리(회의체 비대면화, 유연근무제 및 IT 지원 확대, 대응 프로세스 구축 운영)
------	----------------------------	--

한편, 당사는 2025년 2월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 관련 정책 및 목표, 리스크 관리전략 등의 수립, 전사적 재무 및 비재무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최종 승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련 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yosungtn.com/kr/sustainability/governance/risk>)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전사 또는 조직별 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내부통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임직원의 법규 위반, 계약체결 현황, 소송진행 현황 등에 대해 2025년 1월 31일 점검하였으며, 발견된 경영상 주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과 법위반 사례 등 윤리교육을 분사 및 공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해 상시적인 법률자문업무와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을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 전산 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2회 이상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25년 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연계를 통해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전자품의 공통양식 내 거래소 주요 공시사항 및 공시기준을 별도 안내하여 지연공시가 되거나 누락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지주회사인 (주)효성에서 운영하는 효성기업집단 공시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와 대조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상기 열거한 규정 외에 이익창출의 근본이 되는 투자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투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계획 · 집행 · 관리 및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본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투자관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연결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범위를 종속 회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할 예정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연결회사 전체의 재무보고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이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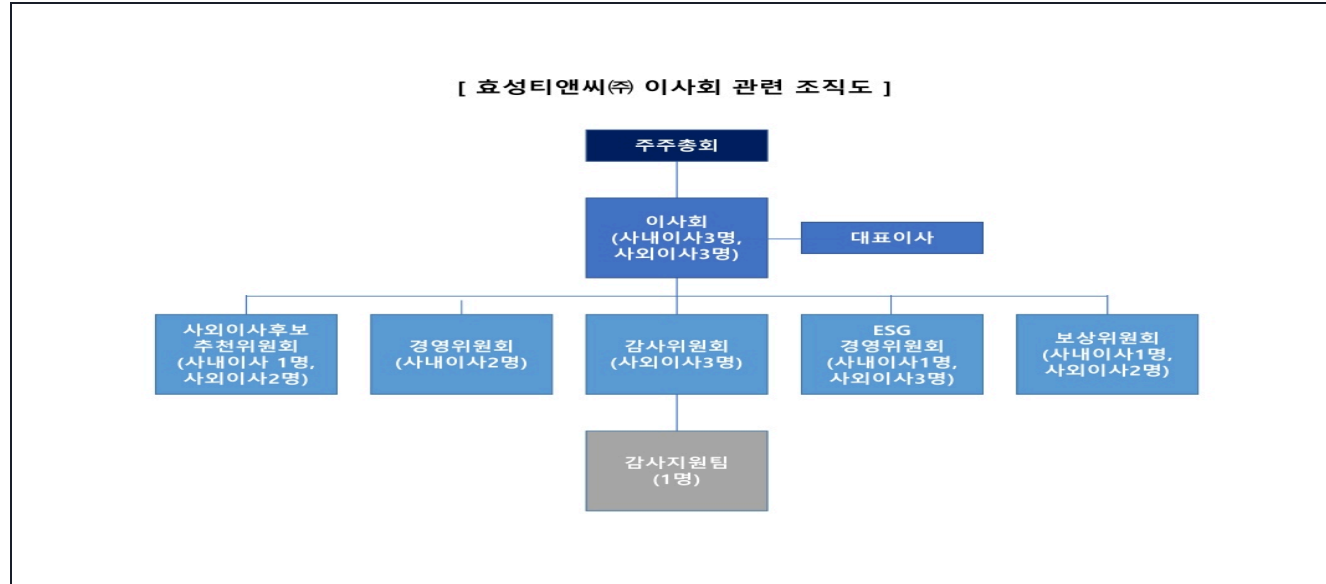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3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법상 요건충족 및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50%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3명,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비중 50%)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만 62세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4-1-2의 임기만료예정일은 예상 주주총회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치형	사내이사(Inside)	남(Male)	63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39	2026-03-19	기업경영	서울대 화학공학과 前) (주)효성 스판덱스PU장,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現) 효성티앤씨(주) 대표이사 부사장
조현준	사내이사(Inside)	남(Male)	57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39	2026-03-19	기업경영	케이오대 정치학 석사 前) (주)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 現) (주)효성 회장
정준재	사내이사(Inside)	남(Male)	54	경영위원회 위원	15	2026-03-19	기업경영	연세대 경영학 학사 前) 효성티앤씨(주) NYPET원사PU PET해외영업팀장, Hyosung Spain, S.L. 법인장 現) 효성티앤씨(주) NYPET원사PU장
은성수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3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3	2027-03-18	금융,재무	前)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재우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감사위원회 위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대표위원	15	2026-03-19	금융,재무	前) 보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해시드벤처스 감사 現) (주)보고펀드자산운용 대표이사
유철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6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대표위원, ESG경영위원회 대표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15	2026-03-19	의료,바이오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주임교수,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CJ(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現) 중앙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회장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와 감사위원회(3명 전원이 사외이사)를 설치하여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 ESG경영위원회(4명 중 3명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 보상위원회(3명 중 2명이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 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3-1(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및 표 4-1-3-2(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 (명)	위원회 코드	비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	A	
감사위원회	1.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3	B	
경영위원회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11. 지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 등의 설치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1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본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	2	C	
ESG경영위원회	1. ESG 관련 정책,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심의 2. 환경, 안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계획 심의 3. 주주권익보호 관련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 심의 4.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심의 5. 기타 ESG 관련 주요사항 심의 등	4	D	
보상위원회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승인 2. 등기이사의 보상체계안 승인	3	E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철규	대표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D,E
	조현준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은성수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D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은성수	대표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D
	유철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D,E
	이재우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D,E
경영위원회	김치형	대표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D,E
	정준재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ESG경영위원회	유철규	대표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E
	이재우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E
	은성수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
	김치형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C,E
보상위원회	이재우	대표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D
	유철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
	김치형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C,D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5에 따라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의 보호, 윤리경영 추진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2025년 2월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5에 의거,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심의하고, 분할·합병·영업양수도·증자·감자 등 주요 경영 사항과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의 ESG 관련 정책과 환경·안전 및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 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는 바, 2024년 3월 14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김치형 사내이사가 이후 개최된 2024년 3월 16일 호선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비중을 50%이상으로 유지함에 따라 상법상 기준을 상회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을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함으로써 이사회는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상 기준(25%)을 상회하는 사외이사 비율(50% 이상)을 유지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경제, 금융, 의료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 최고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재무, 의료 등의 여러 전문분야를 가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김치형 사내이사는 당사 분할 이전 (주)효성 스판덱스PU장, (주)효성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스판덱스를 비롯한 섬유산업 전반에 관한 깊은 안목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준 사내이사는 (주)효성 전략본부장, 섬유PG 및 무역PG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실적 향상을 달성하여 회사의 성장과 기업 및 주주 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정준재 사내이사 역시 분할 전 (주)효성 PET해외영업팀장, Hyosung Spain, S.L. 법인장 등을 역임하며, 섬유사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뛰어난 사업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명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금융 및 재정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가의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금융·경제·재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시장 안정 정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사외이사는 (주)보교펀드자산운용 대표이사,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의 창의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호흥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주임교수,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CJ(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재직 경험을 통해 다양한 행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경험·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6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한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는 사내이사 2인(조현준, 김치형 사내이사)과 사외이사 1인(조인강 사외이사)을 재선임하였으며, 사내이사 1인(정준재 사내이사)과 사외이사 3인(이재우, 유철규, 은성수 사외이사)을 신규선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기간 중 사내이사 1인(배인한 이사) 및 사외이사 1인(조인강 이사)이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으며, 사외이사 2인(오병희, 최병덕 이사)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표 4-2-1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우 사외이사는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2024.03.14)에서 예선 후 2024년 3월 30일 임기가 시작되었으며, 이재우 사외이사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오병희 사외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지속되었습니다.

※ 조인강 사외이사는 2019년 8월 19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2020년 3월 19일 개최된 당사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되었고, 2024년 3월 14일 개최된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다만, 상법상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임기만료일 이전인 2025년 3월 20일 사임하였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조현준	사내이사(Inside)	2022-03-17	2026-03-19	2024-03-14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치형	사내이사(Inside)	2022-03-17	2026-03-19	2024-03-14	재선임(Reappoint)	재직
배인한	사내이사(Inside)	2023-03-16	2024-03-14	2024-03-14	사임(Resign)	재직
정준재	사내이사(Inside)	2024-03-14	2026-03-19	2024-03-14	선임(Appoint)	재직
오병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6-01	2024-03-14	2024-03-14	만료(Expire)	퇴직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최병덕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6-01	2024-03-14	2024-03-14	만료(Expire)	퇴직
조인강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19	2025-03-20	2025-03-20	사임(Resign)	퇴직
이재우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30	2026-03-19	2024-03-30	선임(Appoint)	재직
유철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14	2026-03-19	2024-03-14	선임(Appoint)	재직
은성수	사외이사(Independent)	2025-03-20	2027-03-18	2025-03-20	선임(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금융, 경제, 재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이해를 보유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전문성에 기반한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 사내·외이사를 재선임 및 신규선임 한 바, 현재로서는 여성이사를 선임할 계획이 있지는 않으나, 향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여성이사 선임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사내이사 자질 검증 절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으로 이사회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67

당사의 이사는 분야별로 폭넓게 구축된 후보군 중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유관 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 Pool을 구성하고, 후보자 중 전문성,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후보자의 자격 및 자질을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이사 추천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사외이사 비율 67%)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대표위원을 맡아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등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는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제6기 정기주주총회, 제7기 정기주주총회)

당사는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된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0일전,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21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공시에 각 후보자들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등을 안내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6기,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6기 정기주주총회	조현준	2024-02-23	2024-03-14	20	사내이사(Insider)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김치형	2024-02-23	2024-03-14	20	사내이사(Insider)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정준재	2024-02-23	2024-03-14	20	사내이사(Insider)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이사회)	
	조인강	2024-02-23	2024-03-14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이재우	2024-02-23	2024-03-14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유철규	2024-02-23	2024-03-14	20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7기 정기주주총회	은성수	2025-02-27	2025-03-20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을 공시함으로써,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나, 당사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의 내부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프로세스의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조현준	남(Male)	회장(사내이사)	O	전사 경영전반 총괄
김치형	남(Male)	부사장(대표이사)	O	전사 경영전반 총괄
정준재	남(Male)	상무(사내이사)	O	전사 경영전반 총괄
은성수	남(Male)	사외이사(감사위원)	X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유철규	남(Male)	사외이사(감사위원)	X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이재우	남(Male)	사외이사(감사위원)	X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2) 미등기 임원 현황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은 41명으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소관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담당임원을 말하며, 그 현황은 매분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효성티앤씨(주) 미등기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노재봉	남(Male)	부사장	상근	세빛섬사업단장
이건종	남(Male)	부사장	상근	취저우 네오켄법인 동사장
이창환	남(Male)	부사장	상근	중국 스판덱스법인 동사장 및 가흥화공 동사장
김용섭	남(Male)	부사장	상근	CTO
김종민	남(Male)	전무	상근	도쿄법인장
배인한	남(Male)	전무	상근	동나이법인장 겸)동나이 나이론법인장
주영돈	남(Male)	전무	상근	동나이법인 VB부문 건설담당
최종일	남(Male)	전무	상근	재무실장
이인덕	남(Male)	전무	상근	밀라노법인장
김기현	남(Male)	상무	상근	철강1PU장
김성수	남(Male)	상무	상근	가흥화공법인 총경리
김용태	남(Male)	상무	상근	가흥 판매법인 화동영업 담당
김철수	남(Male)	상무	상근	동나이법인 NY사업담당
박성열	남(Male)	상무	상근	화학PU장
석병식	남(Male)	상무	상근	스판덱스PU 기획 담당
신경중	남(Male)	상무	상근	가흥 판매법인 화남영업 담당
이성수	남(Male)	상무	상근	중국 구매 담당 겸)본사 구매 담당
이시연	남(Male)	상무	상근	인도 텔리법인장 겸) 인도 스판덱스법인장
이재우	남(Male)	상무	상근	직물/염색 및 패션디자이너 담당
이정훈	남(Male)	상무	상근	동나이법인 재무 담당
임규호	남(Male)	상무	상근	터키법인장
임장규	남(Male)	상무	상근	스판덱스PU CMO
조도준	남(Male)	상무	상근	브라질 스판덱스법인장
최학철	남(Male)	상무	상근	섬유PG 울산공장 관리 담당
현광철	남(Male)	상무	상근	취저우 네오켄법인 총경리
강대찬	남(Male)	상무	상근	닝샤스판덱스법인 총경리
강태호	남(Male)	상무	상근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Nylon 영업 담당
김성수	남(Male)	상무	상근	홍보 담당
김원배	남(Male)	상무	상근	철강2PU장
배재범	남(Male)	상무	상근	광동·주해스판 총경리
손해성	남(Male)	상무	상근	터키법인 영업 담당
오준석	남(Male)	상무	상근	동나이법인 VB 부문 담당
유상훈	남(Male)	상무	상근	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스판덱스PU SCPO
유소라	여성(Female)	상무	상근	스판덱스PU 섬유마케팅, 테크니컬서비스 담당
이승욱	남(Male)	상무	상근	재무실 회계 담당
임상수	남(Male)	상무	상근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PET 영업 담당
장기수	남(Male)	상무	상근	경영전략실 임원

정영환	남(Male)	상무	상근	동나이법인 스판덱스부문 영업 담당
엄기용	남(Male)	상무	상근	프랑크푸르트지사장
이현호	남(Male)	상무	상근	스판덱스PU Diaper 담당
전신우	남(Male)	상무	상근	가흥화공법인 중국 재무 담당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X)

당사는 기업가치 및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두고 있지 않으나,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부패 방지준수 규정 수립,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HR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직속 기구인 HR 상담실을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감사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하고 등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횡령·배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조현준 사내이사가 횡령 혐의에 대해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외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조현준 사내이사는 효성그룹의 총수로서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하고 회사 및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룹 총수로서 조현준 사내이사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경영의 원칙 하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 모든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내부감사규정과 준법통제기준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전(全)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주주권의 침해 및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법령과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며, 선임 이후에도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과거 당사(계열회사)에서 재직할 경력 또한 없습니다. 자세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은성수	3	3
유철규	15	15
이재우	15	15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현재 재직중인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선발요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 선임 시 상법상의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2025년 3월 20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은성수 사외이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은성수 사외이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 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평판 조회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와의 이해관계(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는 후보자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은성수 사외이사 선임 시, 은성수 사외이사가 2024년부터 고문으로 재직 중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최근 3년간 다수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들은 사외이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사외이사 간에 중대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관계법령 준수 및 철저한 내부 점검 절차를 통해 결격 사유,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적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으며, 정기·수시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등기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아래 임기만료일에는 예상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은성수	O	2025-03-20	2027-03-18	-	-	-	-	-
유철규	O	2024-03-14	2026-03-19	-	-	-	-	-
이재우	O	2024-03-30	2026-03-19	(주)보고펀드자산운용 대표이사	(주)보고펀드자산운용	대표이사	'05.06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 없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부서가 있으며,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현황 등의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며, 사외이사들의 질의나 자료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활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에는 이사회 간사(재무실장)와 소위원회별 지원 부서를 두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자금팀
- 감사위원회 : 감사지원팀
- 경영위원회 : 경영기획팀
- ESG 경영위원회 : 자금팀, ESG경영팀
- 보상위원회: 인사팀

이들 부서는 신입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경영 정보의 제공, 기타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ESG경영 현황, 주요 이슈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내·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의 상세한 교육 실시 현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4년 01월 30일	회사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방문설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2월 22일	회사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서면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4월 25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6월 30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유철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사회 과정을 수료함
2024년 07월 24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8월 31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조인강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사회 과정을 수료함
2024년 10월 28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11월 21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이재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 대상 세미자 과정에 참석함
2025년 01월 21일	회사	이재우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1월 22일	회사	조인강,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04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25일	회사	은성수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26일	회사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내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당사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직무 수행 활동 및 역량, 참여도 등을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평가절차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 시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 재임 기간 중 담당업무 관련 실적, 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및 외부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재선임 시 이를 반영하는 절차, 규정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 및 정량적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와 같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책임과 역할, 재임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실적, 이사회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참여도)과 회의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재선임 시 해당 이사의 참석률 및 활동 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한 실적 및 참여도,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개별평가에 반영하는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전문성 · 기여도 · 공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방안 및 정량적 평가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보상 관련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 운영을 통해 기본 급여로 한정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보상 또한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당사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보상항목: 기본급여로 한정, 기본급여 외 성과급 등 별도 보수 미지급)을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26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6에 따라, 보상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체의 보상 한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세부 보수 내역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정관에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공시제출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에게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 보상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외부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외이사의 보상 역시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소집과 결의방법, 운영절차 등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과 3월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 주주총회소집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수일 내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호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의 발생 또는 일정상 정기 이사회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적어도 개최 1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 시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각 이사진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는 총 12회(정기 6회, 임시 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안전통지 일자, 출석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4년,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이사 조현준은 2024년 7회차, 2025년 1회차 이사회 의안인 영업양수도계약 당사법인들의 지배회사인 (주)효성의 최대주주로서, 본 안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안전통지 일자	구분	안건 의안내용	가결여부	출석/ 정원	
1회차	정기	2024.01.31	2024.01.28	승인	1. 제6기(2023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6/6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3. 2024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	1. 2023년 4분기 주요 경영활동 보고	-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3. 준법지원활동 결과 보고	-		
					4. 2023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2회차	임시	2024.02.23	2024.02.22	승인	1. 제6기(2023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가결	6/6	
					2. 제6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보고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2023년)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3회차	임시	2024.03.16	2024.02.23	승인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6/6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4.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연장 승인의 건	가결		
4회차	정기	2024.04.26	2024.04.25	보고	1. 2024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	-	6/6	
					2. 2024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5회차	정기	2024.07.26	2024.07.24	승인	1.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6/6	
					보고	1. 2024년 2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 2024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3. 2024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4. 2024년 2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6회차	정기	2024.10.31	2024.10.28	승인	1.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6/6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보고	1. 2024년 3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2. 2024년 3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7회차	임시	2024.12.12	2024.12.02	승인	1. 효성화학(주)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승인 및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5/6	
					2.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가결		
					3.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가결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구분	안건 의안내용	가결여부	출석/정원
1회차	임시	2025.01.23	2025.01.21	승인	1. 영업양수도계약 승계합의서 체결 및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원안가결	5/6
				승인	2. 효성네오컴홀딩스(주) 유상증자 참여 및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원안가결	
				보고	1. 효성화학(주)과의 영업양수도계약 변경합의서 체결 보고	-	
2회차	정기	2025.02.05	2025.02.04	승인	1. 제7기(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원안가결	6/6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승인	원안가결	
					3.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원안가결	
					4. 2025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	원안가결	
					5.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승인	원안가결	
보고	1. 2024년 4분기 주요 경영활동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3. 준법지원활동 결과보고	-					
	4. 2024년 4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3회차	임시	2025.02.27	2025.02.25	승인	1. 제7기(2024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	원안가결	6/6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연장 승인의 건	원안가결	
					3.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	원안가결	
					4. 제7기(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원안가결	
보고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2024년)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4회차	임시	2025.03.22	2025.02.27	승인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6/6
5회차	정기	2025.04.25	2025.04.23	보고	1. 2025년 1분기 주요 경영활동 및 재무제표 보고의 건	-	6/6
					2. 2025년 1분기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의 건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2	100
임시	6	10	97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상법 388조,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개인별 금액을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에서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등급별 지급률 또는 지급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5년 2월 개최된 보상위원회에서 사내이사의 경영성과(계량지표와 글로벌경영, 대내외 경영환경, 회사 성과에 대한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개별 실적 평가에 따라 보상 지급 시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급여 외에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세부 보수내역 및 보수지급 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공시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소액주주의 권리의식 강화,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임원에 대한 소송 가능성과 배상책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임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은 본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상 불법적인 사적이익 추구, 범죄행위, 고의적인 법령위반 행위, 공해물질이나 원자핵 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기존 기업지배구조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을 거쳐 당사의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설문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검토하여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ESG경영위원회에서 ESG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간 지속가능경영 개선과제 선정 및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 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5년 2월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사외이사의 경우 개별 실적평가에 따라 보상 지급 시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급여 외에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외 이사를 포괄한 성과평가 및 이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은 찬반 의사결정으로 갈음되는 바 별도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며,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이사회 결의는 당사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합니다. 개별이사의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는 매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공시하여 이사회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이사 조현준은 2024년 12월 12일에 개최된 이사회 의안인 영업양수도계약 당사법인들의 지배회사인 (주)효성의 최대주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김용섭	사내이사(Inside)	2018.06.01 ~ 2022.03.17	50		50	100			100
김문선	사내이사(Inside)	2021.03.18 ~ 2023.03.16	88		50	100	100		100
조현준	사내이사(Inside)	2022.03.17 ~ 현재	95	86	100	100	100	100	100
김치형	사내이사(Inside)	2022.03.17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배인한	사내이사(Inside)	2023.03.16 ~ 2024.03.14	100	100	100		100	100	100
정준재	사내이사(Inside)	2024.03.14~현재	100	100			100	100	
오병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6.01 ~ 2024.03.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인강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8.19 ~ 2025.03.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병덕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6.01 ~ 2024.03.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재우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14~현재	100	100			100	100	
유철규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14~현재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의 주요 토의 내용 등 활동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개별 이사의 자필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이사 개인별 토의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의 활동 내역이 재선임 여부 및 보수에 반영되며, 그 내용이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므로 당사 이사는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주요 토의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가 이사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저해할 수 있는 바, 이사 전원의 동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사별 토의내용 기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위원회(사내이사 2명)를 제외한 4개 위원회를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감사위원회는 전원, 보상위원회는 2/3)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일부는 이사회 전원이 함께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제출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김치형 대표이사, 정준재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각 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이사회에 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별 사외이사 구성현황]

위원회명	총원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비율	위원장
감사위원회	3	3	100%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2	67%	사외이사
보상위원회	3	2	67%	사외이사
경영위원회	2	0	0%	사내이사
ESG경영위원회	4	3	75%	사외이사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향후에도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사외이사가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며,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분기별 결의사항을 정기 이사회 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운영 현황 및 감사 보조조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동 보고서의 [4. 감사기구 - (세부원칙 9-1) - 나.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위원회를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소집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상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경영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제3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이사회 부의가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4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업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경영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의 실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위원이 소집하고,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인 당사 차입금 조달 및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 ESG경영위원회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5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5 제1항, 제5항, 제6항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5항에서 심의·의결·점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의 사외이사는 3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ESG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현재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위원이 소집하고,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ESG경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SG경영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와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의 제개정에 대해 의결하며, 배당 및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등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과 ESG경영 관련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합니다. ESG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5) 보상위원회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6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6에서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서 심의·의결·점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현재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위원이 소집하고,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보상위원회 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 보고서의 [IV. 이사회 - 1. 이사회 기능 - (세부원칙 3-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와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의 작성방법은 이사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정기이사회 시 분기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내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현황은 표 8-2-1 이사회후추천위원회 개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ESG경영위원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개최내역 및 이사회 보고현황은 표 8-2-2: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내역과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에 중복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분기별로 결의된 안건들을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중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안건들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보고 전이나,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표 8-2-1: 이사회후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4	사외-1차	2024-02-23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후보자: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가결(Approved)	O
	사외-2차	2024-03-16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대표위원:유철규)	가결(Approved)	O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5	사외-1차	2025-02-27	3	3	결의(Resolution)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후보자:은성수)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5	ESG-1차	2025-03-22	4	4	결의(Resolution)	ESG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대표위원:유철규)	가결(Approved)	O
	ESG-2차	2025-04-25	4	4	결의(Resolution)	1.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 ESG경영현황 보고	가결(Approved)	X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5	ESG-1차	2025-03-22	4	4	결의(Resolution)	ESG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대표위원:유철규)	가결(Approved)	O
	ESG-2차	2025-04-25	4	4	결의(Resolution)	1.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 ESG경영현황 보고	가결(Approved)	X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상기 기재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에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결의된 안건들을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의 참석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의 안건 중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안건들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보고 전이나,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개최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참석률 현황은 동 보고서의 [4. 감사기구 - 세부원칙 9-2- 가. (3)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 참석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의 참석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4년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정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2024.01.0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1.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1.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1.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1.1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1.3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2.2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2.28	2/2	결의사항	2024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 거래내역 승인 건	가결	보고
2024.03.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3.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3.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3.1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3.16	2/2	결의사항	경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 건(대표위원:김치형)	가결	보고
2024.03.16	2/2	결의사항	이사보수 집행 권한 위임의 건	가결	보고
2024.03.2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4.0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1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1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22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2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4.2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5.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5.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5.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5.0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5.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0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1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설비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6.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14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2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2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6.2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7.0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7.1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증설 투자 건	가결	보고
2024.07.2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7.30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0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1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2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2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8.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0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0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0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13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09.27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0.07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0.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0.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0.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0.2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1.05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1.1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1.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1.1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1.1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2.0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2.13	2/2	결의사항	신규법인 설립 건	가결	보고
2024.12.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2.17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2.2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4.12.3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 2025년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정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2025.01.0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1.07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1.14	2/2	결의사항	신규법인 설립 건	가결	보고
2025.01.15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1.1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1.23	2/2	결의사항	효성네오켐(주) 주식매매계약 체결 건	가결	보고
2025.02.0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2.06	2/2	결의사항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 건	가결	보고
2025.02.06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2.20	2/2	결의사항	파리 지사 설립 건	가결	보고
2025.03.1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3.12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3.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
2025.03.20	2/2	결의사항	2025년 최대주주등과의 예상 거래내역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5.04.09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1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1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14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설비 투자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1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1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8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29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4.30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5.13	2/2	결의사항	해외법인 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2025.05.26	2/2	결의사항	은행업무 관련 건	가결	보고예정

(3)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보상위원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의 출석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상위원회는 2025년 2월 설치되어, 2024년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개최일자	출석/정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여부
2025.02.27	3/3	결의사항	1. 보상위원회 대표위원 선임(대표위원:이재우)	원안가결	보고
			2.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보수한도 승인	원안가결	보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총 5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정기이사회 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및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의사항을 빠짐없이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2명의 회계·재무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1) 감사위원회 구성 및 현황

당사는 관련 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6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총 3인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여 위원 전부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 및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당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은성수	대표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13년 ~2014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2014년~2016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2016년~2017년 한국투자공사 사장 2017년~2019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19년~2021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2년~2023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4년~현재 김 · 장 법률사무소 고문	회계 · 재무전문가
유철규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14년 ~ 201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주임교수 2016년 ~ 2019년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17년 ~ 2023년 CJ(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05년 ~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2023년 ~ 현재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APSR) 회장 2024년 ~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외래교수	
이재우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1998년 ~ 2000년 H&Q AP Korea 대표이사 2000년 ~ 2005년 리먼브라더스인내셔널증권 한 국대표 2005년 ~ 2016년 보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6년 ~ 현재 보고펀드자산운용 대표이사	회계·재무전문가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명기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은성수, 이재우 사외이사 2인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사외이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산업 발전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이끌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서 각각 보유자산 증대와 국제업무 확대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우 사외이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대표, 이후 현재까지 보고펀드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폭넓고 깊이 있는 금융 관련 전문 지식 및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은성수, 이재우 사외이사 모두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명시된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며, 상법 제 542조의11 제2항이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2018년 6월 1일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동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승인 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상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한편,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25 사업연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기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개최 전 방문설명 시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포럼, 세미나 등에 참가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발생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4년 01월 30일	회사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방문설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2월 22일	회사	오병희, 조인강, 최병덕	서면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4월 25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7월 24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08월 31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조인강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감사위원 입문 및 보수과정을 수료함
2024년 10월 28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4년 11월 21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이재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감사위원 대상 세미나 과정에 참석함
2025년 01월 21일	회사	이재우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1월 22일	회사	조인강,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04일	회사	조인강,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25일	회사	은성수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2월 26일	회사	이재우, 유철규	방문설명을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함
2025년 05월 09일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은성수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국내외 환경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세미나 과정에 참석함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O)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방문설명 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 및 규정,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감사실무 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사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O)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명시하였고, 동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3항에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없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명시하였고, 동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 실무지침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 제2항에 명문화하였고, 제6조 제4항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기업 정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접근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감사지원팀)를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 인력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회계업무 경력자(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팀은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부설기구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부설기구 현황]

부서명	직원수	직위	평균 근속연수	비고
감사지원팀	1명	Performance Manager	1년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직속 조직으로 감사위원회가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회계업무 경력자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원팀은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상이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로 지급될 경우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으나, 자체 보상정책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지급되었던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기타 사외이사 보수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 지급 금액]

구분	인원수	보수 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161백만원	54백만원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상기 인원수는 2024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감사위원 1인에게 실제 지급한 연간 보수금액으로, 당사는 모든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이 사외이사로,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과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간의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실정에 적합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관련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회사 전반에 걸쳐 투명한 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임시위원회 개최 등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 등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외부감사인인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말 이후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연 2회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사용자로부터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고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대표위원이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1일 전에 이를 각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가질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의사록의 사본을 7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외부감사인인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회계 관련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보고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자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7조에서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말 이후 및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연 2회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의 일상 감사 및 절차를 기초로 상법 제447조의4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종료 후 각 안건별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감사위원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내 보존하고 감사위원회는 동 의사록의 사본을 7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4년 1월 1일~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 동 기간동안 총 33건의 안건(승인 12건, 보고 21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2024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구분	의안내용	가결
1차	2024.01.31	3/3	승인	-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변경의 건	가결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사전 승인의 건	가결
		3/3	보고	- 2023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보고	- - -
2차	2024.02.23	3/3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의 건	가결
3차	2024.02.23	3/3	승인	- 제6기(2023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	가결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	가결
4차	2024.04.28	3/3	승인	-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3/3	보고	- 2024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2024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용역 체결현황	- - -
			3/3	보고	- 2024년 2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현황 보고
6차	2024.10.29	3/3	승인	- 감사위원회 부설기구 책임자 임면의 건	가결
		3/3	보고	- 2024년 3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현황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예정 현황 보고	- - -
7차	2024.11.28	3/3	보고	- 효성화학(주) 특수가스사업부 인수 거래구조 법률자문 검토보고 - 효성화학(주) 특수가스사업부 외부평가기관 선정 보고	- -

- 2025년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구분	의안내용	가결
1차	2025.02.05	3/3	승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 2024년 4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3/3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현황 보고	-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의 건	-
2차	2025.02.27	3/3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의 건	가결
3차	2025.02.27	3/3	승인	- 제7기(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감사의 건	가결
		3/3	승인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제출의 건	가결
4차	2025.03.22	3/3	승인	- 감사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가결
5차	2025.04.25	3/3	보고	- 2025년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 2025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계약 체결 현황 보고	- - -

한편, 동 기간동안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100%로,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 오병희, 최병덕은 2024년 3월 14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하기 표 9-2-1의 오병희, 최병덕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임기만료일 이전에 개최된 감사위원회까지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조인강은 2025년 3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하기 표 9-2-1의 조인강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사임일 이전에 개최된 감사위원회까지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유철규는 2024년 3월 14일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하기 표 9-2-1의 유철규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선임일 이후에 개최된 감사위원회부터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이재우는 2024년 3월 14일 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예선되어 2024년 3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하기 표 9-2-1의 이재우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임기 시작일 이후에 개최된 감사위원회부터의 출석률입니다.

※ 감사위원 은성수는 2025년 3월 20일 당사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하기 표 9-2-1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석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병덕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오병희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조인강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이재우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유철규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2조에 의거 최소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평균 출석률은 100%를 기록하며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매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 전에 각 안건에 대한 사전 보고와 질의 응답을 대면 실시하고, 이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개최일 전까지 상세히 지원하여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전문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기타 특이사항 등은 모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41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계약,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당사는 분할 전 (주)효성이 2017년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후 의결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지정 2년(2018.01.01 ~ 2019.12.31)을 조치받았기 때문에 분할회사인 당사 또한 2019년 사업연도까지 지정감사인(삼덕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2022년 3개 사업연도 및 2023년~2025년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한 후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 회계법인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 감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배정을 분배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비고	
감사품질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 감사담당자의 경험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징계 여부	-
	회계법인의 역량	- 내부품질관리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전문가 활용 - 감사위원회(감사)와 커뮤니케이션	-
가격입찰	제안 보수의 적정성	-	

상기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당사 및 계열회사의 결산 일정에 따른 감사 일정의 구체성, 감사 참여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 감사수행전략 부분과 당사의 자산규모 및 회계처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고려한 보수의 적정성 부분 등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당사의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에는 과거 (주)효성에 대한 감사업무 경험이 풍부하여 당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계 최고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삼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업무를 의뢰하여 급변하는 회계 및 감사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후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2월 14일)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고, 동 기간 내 회사 홈페이지에도 선임사실을 공고(2023년 2월 23일)하여 주주에 대한 보고 또한 완료하였으며 해당 공고 내용은 최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사와의 최초 감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0년도~2024년도 1분기 검토, 2분기 검토, 3분기 검토 및 2020년~2024년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당사의 2020년도~2024년도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 및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2025년도 1분기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분기재무제표 및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 하에 지정 선임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후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외부감사인 선임이 없어, 선임과 관련하여 개최된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 및 점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공시대상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중 발생한 당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의 계열사를 통해 경영자문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삼일회계법인	2024년 11월	인도 스파 FY23-24, FY24-25 법인세 검토 등	2024년 11월 ~ 업무종료시	1,250천INR	-
삼일회계법인	2024년 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24년 11월 ~ 2025년 9월	1억 5천만원	-
삼일회계법인	2024년 3월	동나이법인 2023년 법인세 검토	2024년 3월	98백만VND	-
삼일회계법인	2024년 3월	2023년 세무조정	2024년 3월	16백만원	-
삼일회계법인	2024년 3월	미환류 법인세 경정청구	2024년 3월 ~ 업무종료시	환급세액의 4%	한도 80백만
삼일회계법인	2024년 5월	동나이법인 이전가격 용역	2024년 5월 ~ 업무종료시	331백만VND	-
삼일회계법인	2024년 5월	동나이이론법인 이전가격 용역	2024년 5월 ~ 업무종료시	184백만VND	-
삼일회계법인	2024년 5월	본사 세무조사 자문용역	2024년 5월 ~ 2024년 10월	2억원	-
삼일회계법인	2024년 6월	밀라노법인 이전가격 용역	2024년 6월 ~ 업무종료시	15천EUR	-
삼일회계법인	2024년 7월	인도무역법인 FY23-24 법인세 검토	2024년 7월 ~ 업무종료시	250천INR	-
삼일회계법인	2024년 7월	인도무역법인 FY22-23 법인세 검토 및 FY17-21 법인세 경정청구 자문용역	2024년 7월 ~ 업무종료시	550천INR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주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내 명문화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당사 경영진의 참석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회의 개최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대면(또는 이에 준하는 화상회의) 소통을 실시하며, 주요 사항 협의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감사위원회 종료 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감사계약 및 독립성, 연간 감사일정, 핵심 감사사항 및 재무제표 검토 결과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동 회의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4년 1분기 커뮤니케이션	2024-01-31	1분기(1Q)	통합감사 계획/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024년 2분기 커뮤니케이션	2024-04-26	2분기(2Q)	통합감사 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024년 3분기 커뮤니케이션	2024-07-26	3분기(3Q)	통합감사 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024년 4분기 커뮤니케이션	2024-10-29	4분기(4Q)	통합감사 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025년 1분기 커뮤니케이션	2025-02-05	1분기(1Q)	통합감사 계획/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025년 2분기 커뮤니케이션	2025-04-25	2분기(2Q)	통합감사 수행단계 커뮤니케이션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 감사계획의 대상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합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35조 제1항~제3항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중요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결과를 내부 감사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5조 제4항~제6항에서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설립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당사는 제6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수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각각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주주총회별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등 상세한 내용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7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0	2025-02-05	2025-02-19	삼일회계법인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24-03-14	2024-01-31	2024-02-14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주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정보에 대한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연계 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Y(O)

당사는 2025년 3월 31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했습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2024년 3월 코리아밸류업지수에 선정되었으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31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2030년까지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부문별 전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기준일 변경, 연결 당기순이익의 20% 이상 배당 등 배당의 기준과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상기 기업가치제고계획은 이사회에서 수시로 논의된 기업가치제고 방안에 대해 대표이사 및 CFO, 각 사업 부문별 주요 경영진이 협의하여 수립 및 공시하였으나, 본 계획 수립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 이후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03-31	X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Y(O)

당사는 2025년 3월 31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이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을 개최하였으며 분기별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기업가치제고계획 달성방안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기업가치 상승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하기 표 11-2의 '일자'는 NDR 시작일을 기재하였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IR	2025-04-28	국내 기관투자자	그룹 미팅, 컨퍼런스콜 등	X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 기업가치제고계획 달성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효성그룹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3대 과제인 취약 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 친환경 활동을 중심으로 효성이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취약 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가치의 실천으로,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013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성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은 매월 자발적인 급여나눔을 통해 베트남 아동과 결연하고 있으며, 회사는 임직원의 기부금만큼 매칭그랜트로 출연하여 식수위생, 환경개선 등 베트남 낙후 지역의 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장애어린이 가족 후원,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후원사업(생산설비 교체, Com-bridge 사업 등), 굿윌스토어 운영, 취약계층 대상 명절선물, 연말성금 후원 등을 통한 장애/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리사이클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민간기업 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및 김장김치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밀반찬 및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2019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을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 문화 예술 후원

당사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은 소외 계층이 예술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접 예술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편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후원과 임직원 목소리 기부,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가 후원, 한일문화 대축제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고궁 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부터 매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예술후원분야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 호국 보훈

당사는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에 현충탑 참배, 묘역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군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 금은 물론 '사랑의 독서 카페'에 책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프로젝트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 활동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ESG 캠페인과 리사이클, 바이오 섬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린경영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및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컵 사용, 페트병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라남도-완도군과의 MOU를 통해 폐페트병을 리젠 섬유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김해시와의 MOU를 통해 화포천습지의 거울 철새 구조 및 방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양, 비단벌레 등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설비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당사는 2024년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경영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영문으로 당사 웹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yosungtn.com/kr/sustainability/overview/report>)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의 최신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준법통제기준
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7. 공시정보관리 규정
8. 내부회계관리 규정
9. 보안규정
1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